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8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양수・박준태・최수진

조지연 • 이종배 • 강대식

주호영 · 서천호 · 김장겸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 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파매 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 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 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국 또 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 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